

## 덧붙임 2

##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

### 1. 서류심사

구 분	합계	성적 및 교육사항	자격증	자기소개서 (직무수행계획서)	우대 및 가점
청년인턴	100	30	10	60	등록장애인: 5점

\* 장애인전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별도 가점 적용 불가

### 2. 면접시험

구 분	합계	전문성/역량	인성/태도	우대 및 가점
점수	100	50	50	등록장애인: 5점

\* 장애인전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별도 가점 적용 불가

### 3. 자격 종류별 서류전형 배점표

구 분	일반자격	배점
실무원 청년인턴	정보처리/워드프로세서/세무회계/자동차검사/자동차정비 /건설기계정비/건설기계설비/농업기계/컴퓨터활용능력	기사 : 3점 산업기사 : 1점 1급 : 2점 2급 : 1점
공통	한국어능력시험(KBS)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	1급 : 3점 2급 : 2점 3급 : 1점

\* 응시 자격기준으로 명시된 자격은 점수 제외, 동일 자격 중복소지자는 상위 자격 1개만 인정

\*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의 경우 1급으로 적용

### 4. 자기소개서 채점기준(청년인턴)

평가기준	배점		채점기준				
	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직무 수행을 위한 자기개발 노력	성과도출	(10)	10	8	6	4	2점
	자기주도	(10)	10	8	6	4	2점
어려움 극복과 성과 도출 경험	성과도출	(10)	10	8	6	4	2점
	자기주도	(10)	10	8	6	4	2점
공단 지원 동기와 비전	성과도출	(10)	10	8	6	4	2점
	자기주도	(10)	10	8	6	4	2점

### 5. 성적 및 교육사항 반영기준

구분	점수 부여 기준	비고
학교교육	직무 관련 전공과목 이수학점 당 2점 (고등학교 성적의 경우 단위수 당 2점)	사외교육은 수료증 발급 교육에 한함
사회교육	직무 관련 교육 10시간 당 1점	

※ 사외교육 수료증은 면접 시 확인하며 반드시 시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

### 덧붙임 3

###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#### 채용서류 반환청구서<원본일 경우 신청가능>

접수번호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
주 소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
반환청구서류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##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공공근로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<p><b>1.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</b></p>	<span style="margin-right: 10px;">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</span> <span>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</span>
<p>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        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          · 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          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</p>	
<p><b>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        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</b></p>	
<p>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</p>	
<p>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</p>	
<p>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</p>	
<p>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</p>	
<p>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<u>부패행위 비해당</u>         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 → <u>부패행위 해당</u></p>	
<p><b>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</b></p>	
<p><b>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</b></p>	
<p>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</p>	
<p><b>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</b></p>	
<p><b>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</b></p>	
<p><b>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</b></p>	
<p>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</p>	
<p><b>1, 2, 3-1, 3-2 (모두 총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</b></p>	
<p><b>1, 2, 4-1, 4-2, 4-3 (모두 총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해당 여부</b></p>	
<p>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(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)</p>	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지원분야 :

지원자 성명 :

(서명)